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272
----------	-----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이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3조)
 -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30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
 -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운용·관리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안 제4조)
 - 재난의 사전대비,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사항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

-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등(안 제5조)
 -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실비지원
 - 주택임차비용 용자 : 소요액의 70%, 용자한도액 3천만원 이하
- 종전의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충청북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

3. 의안전문 : 붙임

4. 관련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예치기금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충청북도의 지정금고에 각각 예치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2항 및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예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5조(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등) ①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용자금의 금리는 5%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용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④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하되, 기금을 용자 받은자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충청북도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2557호, 2000. 2.21) 및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2771호, 2003.10.10)는 이를 폐지한다.

관계법규 발췌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①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①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6.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해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7.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3.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사업
4. 영 제32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사업
5.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
6.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7.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8.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 사업

□ 지방재정법

제64조(금고의 설치)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0조(금고의 설치)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기금의 운용·관리)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